

안녕하십니까.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환경교육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의무 시행에 대해 안내 공지드립니다.

「환경교육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받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수료 의무 대상자에 대한 수료 의무는 2022년부터 발생 되고, 2022년까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2025년 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수료하지 않으실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보수교육 의무 수료 관련 Q&A >

1. Q.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22년 이전 일한 경우 보수교육 수료 의무대상자인가요?
⇒ A. 환경교육법(22.1.6 시행, 2021.1.5.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보수교육 수료 의무가 발생합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2022년 근무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2. Q.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다 3년이 되기 전 퇴사한 경우, 보수교육 수료 의무대상자인가요?
⇒ A. 총 근무일이 3년 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수료 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업무로 복귀할 경우 복귀 전후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 3년이 되는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Q.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3년 간 업무에 종사하였지만 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A. 환경교육법 상 보수교육 운영 목적에 따라, 퇴사하였더라도 근무 3년이 되는 해당연도 내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4. Q.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 중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수교육 수료 의무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 보수교육을 수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5년도에 보수교육 신청자가 몰릴 것이 예상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불이익 받지 않으시도록 미리 보수교육 수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에서는 환경교육사 시스템 등을 통해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및 수료자를 파악하고 있으니, 환경교육사께서는 기관 근무 여부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상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규칙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항	50	80	100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법인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 국가환경교육센터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제6조제2항 관련)

1.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일

나.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

2. 보수교육 방법: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당연도를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전후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3. 1일 교육시간은 7시간을 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운영 지침(2022.4.8.)>

제23조(보수교육 방법 및 대상) ② 보수교육 대상자 세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대상자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자 법 제1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단,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어도 보수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교육사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 가능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업무 ○ 환경교육 운영·기획·관리·강의 및 지원업무 등 - 각 기관 총괄업무(각 시설 및 단체의 장), 환경교육 강의활동, 인사, 노무, 교육, 회계, 예산·계약, 홍보, 시설안내 등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대상 판단기준 ○ 보수교육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임 (ex: 교육업무와 운전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 ○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교육사는 보수교육 대상임 ○ 해당 기관의 통상근무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보수교육 대상임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해당연도 판단기준 ○ 환경교육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대상기관에 최초 채용된 경우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거나 익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선택가능) ※ 2019년에 입사하여 2020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2023년, 2026년 등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